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기한이 2017.12.31.로 일몰된 조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몰된 감면 기한 연장(2020.12.31.까지 3년 연장) : 3개 조문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 자동이체 방식을 계좌에서 신용카드까지 확대, 전자송달 방식만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감사실-1747('18.2.28)〕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13070('18.3.2)〕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기간: '18.3.2~ '18.3.2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 또는 전자송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한다.
조례 제2196호(2017.5.29.)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2020년 12월 31일----------2020년 12월 31일----------.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 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2020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

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면) ---------- 2020년 12월 31일----------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1. 자동이체 방식 또는 전자송달----------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자동이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